

제423회 국회 **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의록**
(임시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3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상정된 안건

- | | | |
|---|-------|---|
|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 | 2 |
|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 | 2 |
|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 | 2 |
|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 | 2 |
|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28) | | 2 |
|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 | 2 |

(11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이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특별법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경찰청 인사혁신처에서는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만 당정협의회 참석 및 산불 수습 등을 위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항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11시05분)

○소위원장 이수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안 6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소위에 이어서, 소위심사자료가 아니고 소위심사자료 별지라고 표시된 지난 소위 까지 논의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반영한 별지2-1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2-1 4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까지 논의하시고 여전히 결정되지 못한 부분들, 쟁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부터 먼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2-1 4쪽의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계속 논의하시고자 지난 소위

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검토한 결과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무안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 측에서 검토한 결과 확인하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17쪽, 바로 앞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난 소위 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 수급 연령에 대해서 이번 특별법에서 그 해당 수급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이 부분 역시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걸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렸던 25쪽 교육비 지원 파트입니다.

교육비 지원 파트는 지난 소위 때 교육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를 마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보육료에 관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이미 무상교육을 통해서 보육료가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보육료는 제외하고, 지원대상들을 법률에서 이미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은 모두 다 논의를 마치셨는데 다만 교육부에서 대학 등록금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소위에 보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2쪽입니다.

42쪽에는 국가가 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사단 또는 재단, 유가족협의회 등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확인하시고 논의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46쪽은 특별법에서 현행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조사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자료 하단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마련한 부대의견안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해당 부대의견안을 이번 특별법을 의결할 때 부수안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소위 때 말씀하셨던 시행일에 관한 부분인데 지난 소위 때 시행일은 김은혜 의원안에는 3개월, 다른 의원님들 안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정법률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설정하는 2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소위에서 제시하신 바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부터 의견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범위에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실상의 배우자’에 대한 그것을 어

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법안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자 확인 근거를 명시하고 그밖의 사실상의 배우자에 대한 확인 대상 절차 서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20조 권향업 의원안의 ‘무안국제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항 7개를 저희가 특정을 해서 공항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점공항을 유치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경영상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조 부분은 삭제 의견 드립니다.

다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한 출연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소위 이후에 계속 기재부 중심으로 논의가 됐는데 대안을 찾았습니다마는 대안에 대한 검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회의 전에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결론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있는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부대의견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행일도 저희가 2개월로 하는 걸로 수용을 합니다.

다만 지원 가능 사항 중에서, 지금 2개월 이후 시행인데 즉시 시행해야 될 항목이 저희가 살펴보니까 일상생활돌봄 지원하고 금융거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해야 될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기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가족대표 측하고 협의를 하고 좀 합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역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건과 다른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유가족들이 보상을 받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고의 인과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보상을 받는 데 짧게는 3~4년 길게는 7~8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사건의 특성 때문에 유가족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정부 입장에서는 누군가 역할 분담을 해서 책임을, 누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가 이 관점을 떠나서 관련된 기관들이 빨리 협업을 통해서 이 상황에 도움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서 저희가 제주항공하고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하고 국가하고 3개 가 누가 더,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직접적인 관련 책임을 분담을 해야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주항공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들여다봤더니 제주항공은 장례식 하고 그다음에 무안공항에 와 계신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계속 상주하

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기여와 재원을 지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국가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금년 12월 29일이 되면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모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데 유가족들께서 제시하는 금액이 대략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들어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국가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제주항공과 국가에 대해서는 영역이 명확치 않고 조금 더 기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다 설명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고 계신데, 다만 공항공사 측에서 아직까지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연 10억이에요?

○소위원장 이수진 그건 이번 추모사업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추정하는 거지, 추모사업에 10억이 듣다 이게 결정되거나 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그렇지만 항상 추모사업을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요 저희가 추모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국토부랑 기재부랑 유가족들과 조금 더 사단법인 설립과 지원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유가족 측이 아니라 한국공항공사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공항공사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기재부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공익법인으로 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비용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가족분들하고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한 것은 공익 사단법인을 구성을 하시면 공익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추모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예산을 재단법인으로 이관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단법인에 대해서 과도기적으로 지원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해 주기로 한 그 뒤 부분과 관련해서 공항공사가 아직 동의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니까 이게 공항공사가 법으로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의무

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저희 기재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이 각각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룰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항공사가 해라’ 이렇게 법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그래서 전문위원님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기관들에 대해서 기관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령에 바로 기관을 명시하는 게 법체계상 생경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법무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예.

○**김미애 위원** 방금 기재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체계상 문제는 어떤가요,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대해서 기관이 지원하는 게?

그리고 이것을 불명하게 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러나 법체계상 맞지 않으면 곤란하고, 나중에 오히려 법을 잘못 만들어 놨다가는 더 피해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달은 사고에 있어서도 재단법인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법체계상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돼야지 지속 가능성이 담보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치하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고.

○**소위원장 이수진** 이거 지난번 소위 때 지적이 돼서 안을 만들어 오라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논의를 하는 건데.

전문위원님 혹시 관련해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좀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전문위원 임종수**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선행 사례들에 있어서는 국가가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안에 각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안에는 유가족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자 하는 안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 즉 유가족들의 자조적 성격이 강한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은 기존의 선례나 입법례 등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재단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해 왔었는데, 지난 소위 이후에 최근에 기재부 국토부가 마련한 방법은 재정지원 주체가 국가가 아닌 자 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내부적으로는 한국공항공사를 상정하고 만들었는데요. 공공기관을 재정지원 주체로 하고 그 재정지원의 기간은 장기적으로는 다른 법률과 같이 다른 사례와 같이 재단법인을 통해서 국가가 계속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되, 그 재단법인 설립까지의 걸리는 기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그사이를 메꾸는 방법으로 유가족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대해서 국가가 아닌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

자라는 게 지금 정부 측에서 구상한 안이고요. 그 해당 안에 대해서 유가족 측과 협의를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익법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법상에는 그냥 비영리법인으로만 되어 있고 세법상 공익법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세법상 나오는 공익법인의 개념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각 법인들이나 기업이 비영리법인에 기부금을 낼 때 해당 기부금을 해당 회사들에 손금이나 지출로 산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세금을 줄여 줄 수 있게 하는 특례 규정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그 법의 시행령에 나오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처 그 비영리법인을 약칭 해서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도 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법률 수준에서 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것’ 그런 조건들은 실제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단위에서 규정하실 사항은 누가 재정 주체가 될 것이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공항공사든 공공기관이든 공공기관으로 정할 것이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해서 재단법인 설립 이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둘 것인지 그 두 가지만 결정하시면 이 문구는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진숙 위원 보통 공익법인, 재단법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정하고 운영을 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통상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임종수 제가 정부 측에서 확인한 것은 세법상 공익법인,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처가 되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3년 동안에 사업 실적을 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일반적으로는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법인들을 위한 예외도 있어서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서 속도를 내려면 조금 더 빨리 지정하는 절차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기재부나 국토부 측에서 좀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시면서 10억 20억 이렇게 예산의 규모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월호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계시는지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방금 10억 20억 한 이야기는 일정 정도의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에 있어서 타당한 건지 까지 같이 그냥 일괄 묶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공익법인 지정 절차와 관련되는 부분은 지원단에서 검토를 해서요 그 부분은 지원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추모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 유가족 대표단을 만났는데요. 거기서 직접적인 추모행사 그다음에 열린음악회와 같은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연동행사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싶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무안공항에 관한 안전성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관광을 손님들이 예전처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림성 행사 등을 요청하셨고요.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그 정도를 하려면 유가족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을 좀 상회하는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

니다.

○전진숙 위원 매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년?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추모행사는 통상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지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매년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진숙 위원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과 규모는 그 사단법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서 집행하는 것 맞지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운영비를 드리는 거고요.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국토부 예산 또는 전남 또는 무안의 자체 관리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다가 공익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때 관련 사업 일체를 재단법인으로 이관해 주는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전진숙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단법인일 경우에는 실제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타 플러스 추모사업과 관련한 것은 자체를 포함해서 국가기관이 어쨌든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거라고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고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로 이해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단에서 그다음 이야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절차나 이런 게 통상 소요되는 시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장 박정수 피해자지원단장 박정수입니다.

잠깐 전 사례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가 14년 4월에 발생하고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의 사단법인은 16년 1월에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지정은 18년 6월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세월호 관련된, 4·16재단이라고 해서 이 재단에 대한 설립은 18년 7월에 설립 허가를 받게 됐고 연이어서 재단에 대한 공익법인 지정은 18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지금 유가족분들은 현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정은 5월에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대한 공익법인 지정은 이어서 국세청을 통해서 기재부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올해 3분기에 신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재단법인 설립 허가까지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사단법인과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 있잖아요.

○국토교통부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장 박정수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유가족분들은 재단을 언제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수월합니까?

○국토교통부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장 박정수 유가족분들이 처음에 사단하고 재단하고 어느 걸 설립할까를 결정을 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족분들 모임 중심으로 해서 사단을 설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재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법인을 통해

서 기부금이라든지 정부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언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성은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지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또 기부하는 사람은 기부금 영수증도 수령할 수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취지에 부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게 계속 사단법인으로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유족과 피해자를 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잘 검토해서 필요하면 설명도 하고 설득도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기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이날이 다가오면 꼭 기부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것인지, 진정으로 추모의 취지가 뭔지, 이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걸 기리는 게 목적이라면 열어 두고 해야 되고 누구나 다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추모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비용을 지원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국가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면 설득을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당장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지 재발이 안 생겨요. 그러면 진심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날에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꼭 이날에 참여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가서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장 박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가족분들도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기부를 받을 수 있게 공익법인에 대한 신청 절차를 바로 밟아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위원장 이수진** 잠시만요. 정준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달희 위원님.

○**정준호 위원** 말씀 죽 들어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말씀 정리해 보면 유가족분들은 사단법인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추모행사도 그때 특정이 되면 나중에 재단법인이 들어오더라도 그 추모사업은 계속 애뉴얼(annual)로 갈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사단법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 측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하신 것 같고.

기재부하고 국토부는 얘기를 죽 해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니까 차라리 공공기관으로 해서 공항공사 정도 상정을 해서 사단법인에 지원을 하고 재단법인으로 갔을 때 그때 국비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생겨 버리는데, 기재부에서도 지금 사정변경이라고 하시는 게 공항공사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본

인들이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있으면, 이게 지금 논의의 핵심이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단법인은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재단법인으로 가서 그 방식대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내용이 아예 차원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되려고 하면 차라리 정부 측에서 사단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A 방안이 있고 B 방안이 있는데 법체계상 둘 다 문제가 하나씩 있다든지 둘 다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소위에서 선택을 해 주라고 좁혀 준 다음에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유가족한테 최종적으로 받겠느냐라고 해서 전체회의를 들어가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 들어 보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저도 정준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소위원장 이수진 잠깐만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달희 위원 답변 좀 들어 보고. 제가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답변 좀 들어 보고……

○전진숙 위원 먼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기간 이야기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그것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이를테면 사단법인에 기본적으로 지금, 재단법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일정 정도를 지원하고 재단법인으로 나면 재단법인에다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것 걸리는 시간이, 아까 이야기 못 했지요. 정리가 좀 안 돼요.

○전문위원 임종수 그러니까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법률 수준에서는 유가족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말고에 직접 연계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려면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되니 공익법인 지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유가족 측의 요청 사항이고요. 그래서 공익법인 지정은 사실 이 재정 지원 부분과는 살짝 벗어난 편트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지정은 그냥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국세청 신청으로 기재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고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정부 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협의회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족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국가가 할 거냐 공공기관이 할 거냐, 사실 그 부분을 법률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부분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면 논점이 2개네요. 사단법인까지 지원을 해낼 건지 하는 문제고. 이후에 재단법인은 갈 거니까 도로 원점으로 와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을 할 건지, 그 지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공항공사에서 할 건지를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잖아요?

○전문위원 임종수 모든 법률안들이 공통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포함돼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다 동의합니다. 그

래서 재단법인 파트는 빼 놓으시면 되고요. 재단법인은 나중에 설립이 되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서 재단법인이 희생자 추모나 아니면 항공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 등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요. 다만 그때까지……

○전진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데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여쭤본 거예요.

○전문위원 임종수 그런데 재단법인 역시 그냥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고요. 그거는 재단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단장이 세월호 때 재단법인이 언제쯤 생겼는지 그냥 선례를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세월호나, 우리가 이런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유족들도 상당히 침착하신 편이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훨씬 기간이 단축돼서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익법인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는 어떤 고민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뜻에 가장 부합한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유족 뜻은 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유족 뜻도 충족하고 가장 이 취지에 부합하는 게 이런 그림이다, 그러나 유족 뜻대로만 하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2개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로드맵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은 이 정도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수진 잠시만요.

저희가 지난 소위 때 어쨌든 사단법인, 유가족들의 뜻이기도 하고 또 자조모임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선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유공자회라든지 기타 중소기업 또 다른 상인회라든지 자조의 성격을 띠고 사단법인을 운영했을 때 얻는 그런 이득이 굉장히 크다, 정부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사단법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가족 대표분들이 유가족들의 신뢰를 얻어서 지금 12월 29일 그 이후부터 한 분 한 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생업을 접고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실제는 그걸 정부가 다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지는 우리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 주는 것들,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특히나 자조적인 성격을 띠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과 뭔가 법인을 사단이든 뭐든 만들어야지, 그런데 지금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인들이 그동안 충분히 희생을 했지만 사단법인을 통해서, 자조적 성격이 강한 사단법인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고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세월호도 그렇고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재단법인 가는 것도 짧게는 2년에서 4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루하루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대 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분들이 알아서 잘하시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지 지금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

시간 동안 그분들의 활동 그분들의 자조적인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해준 건 없습니다. 직장도 못 다니고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 만나서 소통하고 요청하시는 거라든지 얘기들 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다 하고 있지는 못해요. 지자체가 일부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좀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외에 앞으로 조사위원회 결정이 1년 반 그다음에 3년은 걸리지 않겠냐 그리고 또 배·보상까지는 7년 정도, 그래서 이 기간들 다 합쳤을 때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 긴 기간 중에 지금 앞의 기간도 저희가 책임을 못 져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가족 협의안에, 광주 쪽의 변호사단체에서도 같이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어 낸 게 결국은 사단법인이고 이 사단법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옳은 말씀인데 이 절차와 과정과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검토했을 때는 정부가 빠르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 주셔야 돼요.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아까 보고받기로 5월에 사단법인 만들 수 있다고 하셨지요?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장 박정수 유가족들이 5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렇게 보면 세월호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걸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 공익법인도 3분기 안에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그 정도는, 절차 짧는 거는 기재부가 마음먹으면 사단법인이 쉽게 공익법인은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말씀하신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달희 위원 이 부분은 진행이 더디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찬바람 불 때 되면 사단법인이 이런 비영리 공익법인이 되어서 기부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항공사의 특정 부분, 운영비 지원도 재단법인이 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 있어서 이 자조적인 모임인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잘 담아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무엇이며 주말에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정도면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게 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걸 법체계에 어떻게 담아야, 우리들도 그냥 이 자리에 계속 몇 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법에 명시를 잘해 놔야 누가 오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데 다음 재단 만들 때까지 지금 유족협회에서는 사단법인이 운영비와 그리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법에 적시가 되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담으면 그게 가능할지 누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저희가 지금 그 안을 만들고 유가족 대표 측하

고 계속 협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열핏 말씀드렸는데 유가족 측에서는 사고 조사를 해서 누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자인지 규명을 해서 본인들을 도와주게 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련되는 단체들이 하루라도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유가족들의 최대 요구사항입니다, 본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를 떠나서 직접 관련되는 제주항공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국가가 누군가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빨리 들어가서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현재 유가족들이 무안공항에서 상주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제주항공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있고 추모사업은 국가가 하고 있으니, 사단법인의 형태로 갔을 때 한국공항공사도 본인들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로서 가 아니라 지금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 관련자로서의 역할 분담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공항공사보고 돈을 내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달희 위원 요청인데 결론은 안 났나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전이 됐던 걸로 아는데 나중에 또 좀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달희 위원 국토부차관님, 이게 주말이 지나면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이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가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법안을 검토를 했고요. 다만 공항공사는 어제 늦게 이 연락을 받고 자기들도 좀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 사실 이렇게 전례도 없고 또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국공항공사하고 또 크게는 인천공항공사도 같이 불러서 의견을 좀 모으고 주말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무실 지원금, 운영비 이런……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한 오류 억 정도……

○이달희 위원 연?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연간 운영비가 오류 억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기간은 이게 법안에서는 10년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년, 아까 세월호 사례를 보고, 세월호 사례보다는 지금 사단법인에 대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달희 위원 예, 엄청 빠르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3년이나 이렇게 끊어서, 최장 10년이지만 이렇게 해서 지원 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원의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안도 주말에 작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또 그거에 대해서 공항공사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거는 국토부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단법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잘 없지 않습니까?

까? 그걸 법에 명시해 가지고 할 수도 있나요? 어디 시행령에 담는 겁니까? 우리 특별법 시행령에 그 지원 사항을 담을 예정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검토하는 안은 지금 보니까 법에다가 공항공사를 박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에 문제가 있으면 또 공공기관 운영법을 따와서 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이렇듯 저렇듯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법체계상 맞는 건지, 공항공사를 책임 주체로 딱 명시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도 맞는지 그런 부분이 잘 확신이 안 들고.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전례도 보고 비교법적 검토도 하고 이런 지난한 노력을 하잖아요. 법이 만들어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혼란을 주고 또 비판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으로 해서 공익법인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기부금도 모집할 수 있고 그건 다 좋은데, 그러면 그때 공익법인이 됐을 때랑 추후에 또 재단법인을 설립할 텐데 그 차이가 뭔지. 공익법인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도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제기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족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진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유족들이 재단법인으로 가지 않고 사단법인을 원하는 것이냐……

○**김미애 위원** 저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유족들의 뜻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입법하는 우리 입법기관은 유족들 뜻을 담는데 유족들도 그 취지가 남아 들어도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훼손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공익법인으로 가면 이게 한시적으로 가는 건지, 재단법인은 한시적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시적 성격인 건지, 책임 주체에게 지원과 또 감독 권한까지도 같이 부여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런 게 다 해소가 된다 하면 그 방법으로 가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확히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위원님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사단이나 재단법인으로 하려고 그러면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만일에 설립을 신청하게 되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어떻게 투명하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런 공개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공익법인으로 하면 한시적인 건 아니고요? 계속 갑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오늘 논의를 사실 길게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다 시간들이 이후에 약속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길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주말 중에 이것 관련해서 한국공항공사랑 더 논의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유가족분들도 명확하게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실 의향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요. 다른 것 마저 해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하시지요.

기재부에서 ‘손실보상’을 ‘경제적 지원’ 이렇게 안이 있으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 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전문위원 임종수 저희가 기획재정부랑 국토교통부 간에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18쪽입니다.

18쪽의 이수진 의원님 안, 권향엽 의원님 안에 있는 22조 또는 19조 2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방안’ 또는 권향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자금지원, 대출 보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 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그 바로 위 1항에 특별지원방안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좀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정부 측에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그러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다’가 아니라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소위원장 이수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실보상’ 단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의지가 있으시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당연히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자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을 경직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재량을 좀 주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니까 그 재량이 경제적 지원이지요.

○김미애 위원 이것은 ‘할 수 있다’로 해야 맞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손실보상을 빼신 이유가 있잖아요.

○김미애 위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를 넣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소송에서 책임 부담의 부분으로 남겨 둬야지 그것을 여기다가 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소송의 부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김미애 위원 이 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있을 때 그 부분은 각 책임이 누구누구에게 얼마씩 있는지 거기에서 가려질 부분인데 그 용어를 여기에 넣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

아서, 손실보상이라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준호 위원 소송해도 공제가 되지 않나요? 손실보상을 받고 나서 소송을 해도 손실보상 받았던 금액은 소송에서 제외가 될 것 같은데.

○김미애 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굳이 그 용어를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부담 안 해도 법원에서 그것은 판단할 영역인데 굳이 법에다가 그 용어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준호 위원 위원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항공사고라서 특수성이, 일반배상도 지금 6년 7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소송으로 먼저 들어가도 그 소송도 사고 원인이 나올 때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

○김미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소위원장 이수진 기재부 과장님!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의 중간이 ‘한다’지요,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한다’는 ‘하여야 한다’하고 저희가 같이 행정부에서는……

○소위원장 이수진 경제적 지원으로 바꾸는 대신에 ‘포함한다’로 그렇게 하시는 건 어때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량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실체적으로는요, 오늘 중기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할 계획이다 지금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니까 그 지원은 무안공항에 대한 지원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아닙니다. 지금 이게 1항에 엮여 있는 겁니다.

○이달희 위원 광주·전남.

○소위원장 이수진 광주·전남. 그러면 중기부에서 지금 나와 계시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재도약과장 장상만 중기부 소상공인재도약과장입니다.

현재 법 조문에 1항으로 통합수정 의견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또 시책이 만들어지면,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질 때 참여해서 논의해서 결정될 부분이고요. 다만 기존의 제도 가지고도 지금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피해지역 내의 금융적인 지원 부분은 정책자금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비금융 지원으로서도 만약에 폐업 관련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라고 하는 지원제도가 있고요.

○소위원장 이수진 어떤 거요, 무슨 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재도약과장 장상만 희망리턴패키지라고 하는 현재 폐업 컨설팅부터 해서 재취업 또는 재창업 지원하는 기존의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의 포섭 대상이기 때문에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서 피해지역에서 희망하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중기부에서는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다. 그러면 그 제도와 관련해서 각 의원실에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재도약과장 장상만 예, 알겠습니다. 기존 제도 요약해서……

○김미애 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통합수정의견안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수정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게?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드릴 사항은, 18쪽 보시면 통합수정의견안의 1항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이미 논의가 끝났고 다 동의되신 거고요.

○김미애 위원 이것은 끝났고.

○전문위원 임종수 그 바로 아래 2항에 보면 이수진 의원님 안하고 권향엽 의원님 안에 나와 있는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는 ‘관련 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자금지원, 대출 보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특위의 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2항이잖아요, 2항?

○전문위원 임종수 예, 2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방금 중기부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의미가 담긴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재도약과장 장상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강제적이라고 하시니까.

○김미애 위원 아니, 정확히 이것을…… 대안이 어떤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 ‘포함한다’ 이 내용으로 2항을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냥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소위원장 이수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라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한 건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포함한다’는 일단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재량 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느냐……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포함한다’ 정도도 괜찮다 하는데 국토부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수 없지요. 아, 차관님이시구나. 제가 승진시켜 드렸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넘어가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위원님, 다음에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마지막 검토한 사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교육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입니다.

25쪽 비고란에 보시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여부에 관한 확인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많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 내부 논의를 거쳐서 저희는 전액 지원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고생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열심히 의견 표명을 해 주셨는데 교육부가 거기에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인지 물어봐도 돼요? 확인이 됩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54명 정도 되고요. 소요 재원은 약 2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23명 정도 되고요. 유치원·초중고까지 해서 11명, 대학생 12명 이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30년까지 매년 3억 원 정도, 이후 매년 1억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진숙 위원 그것 하나 남았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관련해서 자녀가 수령했을 때 연령 상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변 안 주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수진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자녀가 받을 때 상한이 국민연금이랑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혹시 설명을……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오영렬입니다.

저희도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나 지난번 소위 때 말씀 주셨던 청년층 취업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연금법 전체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안별로 수급 연령을 달리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받고 계시는 일반 수급자분들의 문제랄지 아니면 입법례나 선례 등을 봤을 때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의 유족분들 내에서, 저희가 19세라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 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후순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기 유족분들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를 신뢰하

셔서 예를 들면 후순위자인 부모님들이 수급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진숙 위원 부모님들이 승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납득이 안 돼서, 무슨 말씀이신지.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 오영렬 현재 체계상 유족연금의 지급 순위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19세 이상이 도과가 되면 그다음 순위자인 부모로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각각의 관계에서 배우자분들은 동순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19세가 넘었다고 해서 수급권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분이 계시면 배우자가 받으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계속 이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전진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이렇게 받았을 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삭감이 되고 그게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갑자기 다시 원점보다 더 앞의, 그 전으로 지금 돌아가셔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게 하네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법에서 다루고 있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에서인가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용이 된다면 그 법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연금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법의 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연령과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건 특별법이니까 그렇게 좀 수정을 하자고 요청을 한 건데 지금 인사혁신처에서는 이것 못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예, 말씀대로 연금법 전체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전진숙 위원 그래서 융통성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전체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제가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재 사안에서 급격히 바꿨을 때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수급……

○전진숙 위원 이 법에 이렇게 특별법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7세로 상향 조정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게 법 어디에 저촉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법과 충돌이 되고, 법적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일부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법의 취지를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 설득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대부분의 분들이 일반 수급자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에서 지금의 수급자, 여기 있는 유족분들 내에서도

지금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셔서 수급의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각기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연금법 차원에서 추후에 충분히 더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 주신 건 충분히 이해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를 했던,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각각의 법이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이후에 법을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 오영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연금법 전반적으로 논의를 할 때 꼭 같이 고민해서……

○전진숙 위원 언제 하십니까?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저희가 지금 법 개정에 대해서 확인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진짜 깊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래서 여기 특위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그 논의가 되면 저한테 별도로 반드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예,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전진숙 위원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서 잘 메모해 놨다가 국회에 연금특위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승계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들은 정부 측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항공안전의 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항공안전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안전법은 저희 특위에서 지금 현재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위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국토위에서 이걸 바로 다루게 될지 이것에 대한 의견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몇 분이 주신 의견은 항공안전의 날을 이번 특별법 안에 넣어서 통과시키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는지는 우리 전문위원이 한번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이수진 의원님께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셨고 거기에 6조의2를 신설해서 '(항공안전의 날) 국가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한다' 이런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특별법에 이 내용을 둘 것이냐 항공안전법에 반드시 두어야 하느냐는 사실 아주 근본적으로는 물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선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세월호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세월호 발생일인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라고 해서 66조의7을 재난안전법에 신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 입법례들도 이러한 어떤 사건에 기반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기본법상에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을 정하는 근거 규정들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이렇게 특정 케이스나 특정 대상을 전제로 한 법률에서 그 해당 케이스만을 위한 날을 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지금 항공안전의 날을 12월 29일로 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혹시 국토부차관님 의견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생각하면 이 특별법에 담는 게 좋겠으나 일반적인 입법례들을 보면 해당 일반법에서 지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일반법에 담는다 함은 결국 국토부차관이 국토위에서 의견을 주셔야 될 텐데 이 12·29 항공안전의 날을 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혹시 행안부 의견 좀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안전정책국장 김주이** 행안부 안전정책국장 김주이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해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면서 만든 날이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게 계기가 됐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안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안전 기본법보다는 개별법에서 담아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수진** 예.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사항인데 자료에 반영이 안 돼서, 61페이지 제5조 보시면요 치유휴직에 관한 적용 특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태원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 이런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때 이 조항이 들어갔던 이유는 세월호 관련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하고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무안 참사 관련된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내용들을 여기다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전문위원 임종수** 위원장님,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임종수** 저희 소위에서 오늘 쪽 논의하신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들은 지금까지 소위에서 쪽 논의하셔서 대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위에서 사실상 다음 회의 때 잠시 정부 측의 최종 의견을 확인하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특별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논의된, 오늘 전문위원실에서 배부해 드린 별지2-1에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특별법안에 대해서 한번 쪽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부에서 말씀하신 부칙에 관한 문제도 맨 끝에, 앞의 조문들을 쪽 읽어 보셔야 부칙도 금방 들으시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1조부터 앞에서 논의하신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좀 빠르게 확인시켜 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얼마나 걸릴까요?

○**김미애 위원** 다음에 해요, 위원장님. 아직 주말 동안에 정리할 것도 있다고 하니 다음에 합시다.

○**소위원장 이수진** 사실 회의 전에 이것 한번 정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생각보다 사단법인 길게 얘기하셔 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전진숙 위원** 그런데 이견 나온 것은 사단법인에 관련된 내용 하나하고 방금 말씀 주셨던 별도 항목으로 넣는 것 두 가지 말고는 다 정리된 것 아닌가.

○**소위원장 이수진** 그냥 다음에 정리해 주시지요.

일단 오늘 나온 말씀들 다시 한번 해서, 지금 사단법인 관련해서 정부 의견 더 듣는 거랑 그다음에 항공안전의 날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데 그것도 조금 주말 중에, 제가 사실은 법사위나 국토위 위원장님들하고 다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의 의지라든지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것 정하는 게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정부 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잘 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고민이 됩니다. 법체계나 이런 것들 보면서 주신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오늘 전문위원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대책 마련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이견이 있는 것 거의 대부분 다 정리가 됐고, 또 전진숙 위원님이 유족연금도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이랑 항공안전의 날 이 두 가지만 주말 중에 정리하셔서 전체회의 전에 소위 잠깐 할 때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소위 위원님들께서 그때 시간 좀 더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미애 이달희 이수진 전진숙 정준호

○첨가 위원(2인)

김대식 백선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백원국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단장 박정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경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 김주이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장 장상만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경찰청

형사국장 유재성